

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63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11월 27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생의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입학준비금의 지원 방법과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
 - 소요예산 : 33,327,970천원

• 운영비			700,000	천원
- 입학준비금운영지원(각종수수료)	$700,000,000\text{원} \times 1\text{식}$	=	700,000	천원
• 학교회계전출금			32,627,970	천원
- (교육청)입학준비금	$300,000\text{원} \times 136,698\text{명} \times 50\%$	=	20,504,700	천원
- (서울시전입금)입학준비금	$12,123,270,000\text{원} \times 1\text{식}$	=	12,123,270	천원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생의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복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.
2. “입학준비금”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.
3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·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,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, 각종학교(중·고등학제)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2.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
제5조(지원 방법 등)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입학준비금은 교복,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 직·간접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 금액)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,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

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제7조(환수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내 전·입학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
3.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
4.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한다.